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8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정준호 · 복기왕 · 조인철
박희승 · 이연희 · 채현일
양부남 · 노종면 · 전용기
염태영 · 이용우 · 한준호
안태준 · 전진숙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협동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 모두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심의·의결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아 업무의 합리성이 저감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30명 이내로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공제조합의 기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감독·감사 기능으로 서로 독립화하며,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

원 수를 각각 25명과 5명 이내로 조정하는 동시에 이전 위원 임기가 종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위원으로 재선임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을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명”을 “25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공제조합 이사장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55조의3에 따른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감독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5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감독 및 감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이하의 위원
 2.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하의 위원
 3. 공제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1명 이하의 위원
- ③ 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감독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그 밖에 감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지명·위촉된 위원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지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u>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u>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 ----- ----- ----- <u>심의·의결</u> ----- -----.
② 운영위원회는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② ----- <u>25명</u> ----- ----- <u>구성하되, 공제조합 이사장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
③ (생 략) <u><신 설></u>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u>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55조의3에 따른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
<u><신 설></u>	⑤ <u>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u>
④ (생 략) <u><신 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u>제55조의3(감독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5조의2에 따른 운영위</u>

원회의 업무를 감독 및 감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이하의 위원

2.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하의 위원

3. 공제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1명 이하의 위원

③ 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감독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그 밖에 감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